

특별희망퇴직규정

제정: 2022.06.01.

개정: 2023.10.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별 희망퇴직 하고자 하는 교직원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할 특별 희망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직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교직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과 일반직, 기술직 등 정규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퇴직일 현재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중에서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자로 한다.

② 특별 희망퇴직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2.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 상태가 되어 자진 퇴직하는 자. 다만,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5. 총장이 학교발전의 필요성과 학사운영의 안전성 그리고 신입생 모집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서 제외한 자.
6. 기타 특별 희망퇴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총장은 교직원 수급계획, 예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 희망퇴직 적용 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특별 희망퇴직 공지) 사무처장은 특별 희망퇴직에 관한 사항을 신청개시 10일전까지 공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특별 희망퇴직 신청) ① 특별 희망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거 희망퇴직이 공지되면 특별 희망퇴직 신청서(별표1)를 교원은 교무처장에게 직원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6.>

② 전 항의 특별 희망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의 퇴직예정일은 당해학기 학기말일로 한다.

제6조(특별 희망퇴직 결정) ① 특별 희망퇴직의 결정은 교원은 교무처장이 직원은 사무

처장이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23.10.16.>

② 총장은 전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에 직원은 직원인사위원회에 특별 희망퇴직에 관한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특별 희망퇴직자를 결정한 후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 희망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한다.

제7조(특별 희망퇴직 고려사항) 총장은 특별 희망퇴직 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한다.

1. 대학의 특별 희망퇴직 정책
2. 특별 희망퇴직 사유
3. 장기근속 우선
4. 상위직 우선
5. 학교발전의 필요성과 학사운영의 안전성 그리고 신입생 모집 결과 등
6. 기타 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특별 희망퇴직 결정 통지 및 취소불가)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희망퇴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무처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 희망퇴직을 통지받은 자는 특별 희망퇴직을 취소할 수 없다.

제9조(당연퇴직)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특별 희망퇴직이 결정된 자는 특별 희망퇴직예정일에 당연 퇴직한다. 다만, 제6조 특별 희망퇴직이 결정된 사망자의 경우 사망 다음날을 희망퇴직일로 한다.

② 특별 희망퇴직자는 의원면직으로 처리하며, [별표1] 특별 희망퇴직 신청서(사직원) 제출을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지급액) ① 수당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정년까지 잔여기간 5년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 희망퇴직 수당을 지급비율에 의거 감액한다.

제11조(근속년수의 계산) 근속년수의 계산은 법인 산하 본 대학교 및 자매기관에서 근속한 최초의 입사일부터 기준하여 특별 희망퇴직예정일까지로 한다.

제12조(수당의 수령권자) ① 수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수당지급 수령권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운영기간) 이 규정은 2023학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3.10.26.>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3조(운영기간)에 한하여 운영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하되, 제13조(운영기간)에 한하여 운영한다.

[별표 1]

특별희망퇴직 신청서(사직원)

결 재	담당	팀장	처장	총장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소 속		직 위	
주 소			
퇴직예정일	년 월 일	정년 일	년 월 일
입사년월일	년 월 일	근속연수	년 개월
수당산정액	원	정년잔여월수	년 개월
산출내역			

특별희망퇴직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1. 본인은 특별희망퇴직이 결정되면 취소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2. 본 신청서는 제9조에 의거 사직원 제출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별도의 사직원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3. 굵은 선 안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작성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원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2]

특별희망퇴직 수당

근속년수	수당지급액	근속년수	수당지급액
1년이상 2년미만	1개월분	11년이상 12년미만	11개월분
2년이상 3년미만	2개월분	12년이상 13년미만	12개월분
3년이상 4년미만	3개월분	13년이상 14년미만	13개월분
4년이상 5년미만	4개월분	14년이상 15년미만	14개월분
5년이상 6년미만	5개월분	15년이상 16년미만	15개월분
6년이상 7년미만	6개월분	16년이상 17년미만	16개월분
7년이상 8년미만	7개월분	17년이상 18년미만	17개월분
8년이상 9년미만	8개월분	18년이상 19년미만	18개월분
9년이상 10년미만	9개월분	19년이상 20년미만	19개월분
10년이상 11년미만	10개월분	20년이상 ~	20개월분

- 주) 1. 수당지급액 산정은 신청 전년도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가족수당, 보직수당은 제외한다
2. 정년까지 잔여기간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 의거 특별희망퇴직수당을 산정한다

정년까지 잔여기간	특별희망퇴직수당 지급비율
1년이하	특별희망퇴직수당의 20% (1/5)
2년이하	특별희망퇴직수당의 40% (2/5)
3년이하	특별희망퇴직수당의 60% (3/5)
4년이하	특별희망퇴직수당의 80% (4/5)
5년이상	특별희망퇴직수당의 100% (5/5)